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3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이만희·김선교·안병길

김상훈 • 권명호 • 정점식

서삼석 · 정운천 · 임이자

김영식 · 정희용 · 김성원

김석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째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 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발생 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소싸움경기가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표권"을 "표권(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기 시행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싸움경기 장 이외의 장소에서 우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싸움경기를 시행하는 해당 소싸움경기장에서 우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기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 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 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 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표권(전 말한다. 자적 형태를 포함한다)-----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경기 시행자는 「정보통신 <신 설>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소싸움경기장 이외의 장소 에서 우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싸움경기를 시행하 는 해당 소싸움경기장에서 우

	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u> <신 설></u>	③ 경기 시행자는 제2항에 따
	른 우권발매 시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
	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
	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등
	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u>한다.</u>
② (생 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